##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3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김위상

주호영 · 서미화 · 김도읍

최보윤 · 김소희 · 최수진

박덕흠 · 김대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대상자 명의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어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사람이"를 "사람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로, "발급하여야"를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전단 중 "붙어 있지 아니한"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붙어 있는"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을 "그 표지를 발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1회 위반: 6개월

- 2. 2회 위반: 1년
- 3. 3회 위반: 2년
- 4. 4회 위반: 영구적 정지

제2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위조 또는 변조 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	②
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u>사람이</u> 신청하는 경우 장	<u>사람 등 장애인전용주차구</u>
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역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차표지를 <u>발급하여야</u>	<u>신청한 사람</u>
한다.	<u>에게 발급하여야</u>
<u>&lt;신 설&gt;</u>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주차표지를 양도 ·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조 또
	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ㆍ
	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u>된다.</u>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	<u>4</u>
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	

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 지를 회수하거나 <u>재발급을 제</u> 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 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⑤ (생략)
-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u>다음 각 호의 기간 동</u>		
안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1회 위반: 6개월		
<u>2. 2회 위반: 1년</u>		
<u>3. 3회 위반: 2년</u>		
4. 4회 위반: 영구적 정지		
<u>⑤</u>		
없는		
있는		
그 표지를 발급받은		
<u> </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u>®</u> (記る 利38円 を日) ⑦		
<u>U</u>		
નો ୮ જો		
<u>제5항</u>		
,		
<u>8</u>		
제4항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u>제5</u> <u>항</u>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7조(과태료)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③ 제1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만원--

<u>제6항</u>
제27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또
는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②</u>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
차 방해 행위를 한 자
<u>&lt;삭 제&gt;</u>
③ 제17조제5항
<u>100</u>

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